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6회 1차 정례회

검토보고서

2025. 6. 16.(월)

순서	검토안건	제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5. 5. 23.
- 회부일 : 2025. 5. 23. (의안번호 : 25-51)

2. 제안이유

-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변경
(안 제10조 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0조
 - 입법예고: 2025. 4. 17. ~ 5. 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※ 위원회 구성 현황

구분	계	당연직	위촉직	비고
위원 수	9	6	3	

- 당연직 : 부구청장(위원장), 행정지원국장(부위원장), 구민안전과장, 예산정책과장, 복지정책과장, 도로개선과장
- 위촉직 :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② 주요 개정내용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변경(안 제10조)

- 위원 수 확대(10명 → 15명)를 통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임.

구분	기존	변경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	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 여 구성한다.	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 여 구성한다.

6. 종합 검토의견

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0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(이하 생략)